

신혼부부 특별공급 (예비입주자포함) [1/2]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0.12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 ※ 사업주체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도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※ 부적격 의심자 및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는 관련된 소명자료 및 부적격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.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	인감증명서	본인	-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[용도: 아파트계약용(본인발급용)]
	서약서	-	- 접수장소에 비치
	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	-	- 접수장소에 비치
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단, 여권의 경우 2020.12.21. 이후 발급 분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 포함)	본인	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 포함)	본인	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, 과거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개명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 일로 설정)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혼인신고일 확인(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
	소득 증빙서류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-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※ 단,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(청약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이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(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전체 포함, 과거이력 포함하여 제출/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) ※ 단,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(청약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이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	
주민등록표등본(전체 포함)	배우자	-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	
복무확인서	본인	-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(군 복무 기간 명시) -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	
부동산 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-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 / 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 ※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신청 결과 및 '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' 제출 (과세년도 2023년 기준 발급,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체크)	
사실증명원	해당자	-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 시 '소득사실없음' 확인 가능해야 함	
비사업자 확인각서	해당자	- 접수장소에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	
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 진단서) 제출(임신확인서 불인정) ※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	
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접수장소에 비치	
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배우자	- 자녀가 입양인 경우	
주민등록표초본(전체 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-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청약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)	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 또는 자녀	-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-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 -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-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	
생업종사 단신부임	단신부임 입증서류 (해외체류 관련 증빙)	본인	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·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 및 파견,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세대원	-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(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)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개명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 일로 설정) ※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 장기 해외체류 이력이 확인될 경우, 체류 국가 확인을 위하여 여권 제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대리인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-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[용도: 서류제출 위임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 대리신청은 불가
	위임장	본인	-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단, 여권의 경우 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

※ 상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 합니다.
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각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세대주 여부,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천호역 마에스트로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년 10월 12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
 ※ 사업주체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도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)으로 발급)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/ 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[또는 해당직장 연봉/근로계약서(직인날인)]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/ 세무서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/ 세무서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(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재직증명서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①, ② 해당 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	①, ②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,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	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전년도 재무제표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재직증명서	① 세무서 ② 세무서 / 등기소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당해회사의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 해당 직장 / 세무서 ② 해당 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	
일용직 근로자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	① 해당 직장 / 세무서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 ② 사실증명(신고 사실 없음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① 접수장소 비치	

※ 해당직장,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 ※ 소득증빙 관련 모든 서류 또한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(예시: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)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